

의안번호	2205579
의 퇴 인	김우영 의원
회 답 일	2025. 1. 10.
추계번호	24B51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5조의2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 신설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2	안 제65조의3 (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이하 “수신료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제1항) 수신료위원은 공영방송의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의(이하 “광역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함(제2항) 1. 회계 또는 감사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2. 방송관련 투자 및 경영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3.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4. 방송업계 또는 방송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방송,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관련 학과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 6. 시청자단체 또는 방송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 7. 기타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에 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제8항)	의무규정
3	안 제65조의5 (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등) 신설	수신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기구를 둘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65조의7 (사무조직) 신설	수신료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조직을 둘 수 있음(제1항)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5조의2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5조의3 (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3	안 제65조의5 (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등) 신설	
4	안 제65조의7 (사무조직) 신설	

2. 상세 사유

-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안 제65조의2, 안 제65조의3, 안 제65조의5, 안 제65조의7 신설)
 - 개정안은 현행 공영방송 수신료 조정 절차를 변경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두고, 수신료 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수신료 산정 및 수신료 배분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사기구·사무조직 설치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른 공영방송 수신료 조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신료 조정을 국회의장 소속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에 신청하면, 해당 위원회가 수신료

조정을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임

[표 1]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 절차

현행	개정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① 한국방송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에 수신료 조정 신청 ② 수신료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수신료 조정을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 ③ 국회의장은 보고된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 여부 결정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현재 공영방송 수신료는 1981년 이후 2,500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최근 20년간 수신료 조정을 위해 국회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 승인안이 4차례 제출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표 2] 공영방송 수신료 조정 승인안 국회 제출 및 처리 결과

연도	금액(월)	결과
2007년	4,000원 (1,500원 인상)	제17대국회 임기만료폐기
2011년	3,500원 (1,000원 인상)	제18대국회 임기만료폐기
2014년	4,000원 (1,500원 인상)	제19대국회 임기만료폐기
2022년	3,800원 (1,300원 인상)	제21대국회 임기만료폐기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및 조사기구·사무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비공무원인 위원의 회의참석 및 검토 수당, 조사기구 및 사무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수신료위원회 및 사무조직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고, 과거 20년간 수신료 조정 시도가 부정기적으로 4회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계기간(5년) 중 한국방송공사가 개정안에 따른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에 수신료 조정을 신청할지 여부 및 신청 횟수 등을 예상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